

# 1.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제정	1972. 3. 9	대통령령	제 6106호
제 1차개정	1974. 7.29	대통령령	제 7214호
제 2차개정	1977.10. 6	대통령령	제 8717호
제 3차개정	1978. 4.19	대통령령	제 8957호
제 4차개정	1979. 2.10	대통령령	제 9319호
제 5차개정	1980. 3.31	대통령령	제 9827호
제 6차개정	1981. 2.28	대통령령	제10216호
제 7차개정	1982. 2.15	대통령령	제10727호
제 8차개정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4호
제 9차개정	1984. 5. 7	대통령령	제11421호
제10차개정	1986. 6.26	대통령령	제11935호
제11차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12차개정	1992. 3. 6	대통령령	제13607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8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방송통신대학의 설치·조직·교육과정·교육방법·입학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하에 국립학교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제 3 조(삭제)

제 4 조(삭제)

제 5 조(학부·학과 및 학생정원) ①방송대학에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자연과학부·교육과학부 및 교양과정부를 두며, 학부에 두는 학과 및 학과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위탁생에 대하여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6 조(공무원의 정원) 방송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학장·학부장 및 학과장) ①방송대학에 학장을둔다.

②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대학을 대표한다.

③각 학부에는 학부장을,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되, 학부장 및 학과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겸보한다.

④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부내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

제 8 조(하부조직) ①방송대학에 교무처·학생처 및 사무국을 둔다.

②교무처장 및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 9 조(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 수업과 및 교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원으로 보한다.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 및 학과의 설치 및 폐지
2. 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3. 교육과정 편성 및 교재편찬
4. 교원의 인사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
5. 기타 처내의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수업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

2. 협력학교와의 협조
3. 방송강의 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학과 실습 교육관리

④ 고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학생에 과하는 각종시험의 관리
2. 성적관리
3. 과제물지도 및 평가
4. 졸업학력평가 시험 및 졸업논문관리

제10조(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 및 학적과를 두되, 학생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학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2. 학생의 상벌 및 장학
3. 지역학습관 업무의 총괄
4. 기타 학생처내의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등록·휴학·복학·제적·수료 및 졸업
2. 학적관리 및 학력증명 발급
3. 학사에 관한 상담

제11조(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 및 경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2. 법령 및 예규의 관리
3. 기획 및 예산
4.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및 심사분석
5. 비상계획 및 민방위
6.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 및 연금
7. 청사관리 및 방호
8. 다른처 및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2. 결산
3. 물품 및 재산의 관리
4.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5. 각종 원천징수
6. 시설 설비의 설계·공사 및 공사감독·검사
7. 시설 및 설비물의 영선과 부대사항
8.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제12조(운영위원회) ①방송대학의 운영에 관한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방송대학에 방송통신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협력학교) ①방송대학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협력학교를 둔다.

②협력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③협력학교는 교육시설의 이용, 교직원의 활용이나 기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방송대학의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 3 항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입학자격) 방송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기타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1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5조(수업방법) 방송대학의 수업은 교재에 의한 학습·과제물지도·방송강의 및 출석수업등으로 하며, 수업방법의 세부사항은 학칙으

로 정한다.

제16조(교육과정) 방송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이수학점) 방송대학의 졸업기준 학점은 학사과정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문대학과정은 8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성적평가) ①학생의 학업성적은 필답고사와 과제제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삭 제)

제19조(졸업 및 학위) ①방송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3년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에 달하기 전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방송대학에서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③학사학위의 수여 및 등록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24조 및 제1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중 개정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4) 부칙 제 2 항을 삭제한다.

제20조(부속시설) ①방송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방송통신교육연구소
2. 도서관
3. 전자계산소
4. 교육매체개발연구소

## 5. 지역학습관 및 시·군학습관

②지역학습관은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각각 두고, 시·군학습관은 필요한 시·군에 두되, 그 설치장소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부속시설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학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시설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시·군학습관의 장은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부속시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편입학) 방송대학의 편입학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22(관계기관의 협조) ①공보처장관은 방송대학의 교육을 위한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의 장은 당해 직장에 재직중인 방송대학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강사료) 방송대학의 수업에 출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납입금) ①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학장은 제1항의 입학금 및 수업료 이외에 실험·실습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

로 정한다.

제26조(학력인정) 방송대학 학사과정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교육법 제128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부 칙(1972. 3. 9 대통령령 제61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7.29 대통령령 제72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197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7.10. 6 대통령령 제87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4.19 대통령령 제895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1978학년도 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 2.10 대통령령 제931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의 규정은 1979학년도에 입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0. 3.31 대통령령 제98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2.28 대통령령 제10216호)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15 대통령령 제1072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통신대학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대학 소속공무원으로 보며,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통신대학의 직에 겸보된 교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대학의 직에 겸임된 것으로 본다.

③(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영에 의한 통신대학의 해당

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82.12.31 대통령령 제1098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부 칙(1984. 5. 7 대통령령 제114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6.26 대통령령 제119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 1 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5조(생략)

부 칙(1992. 3. 6 대통령령 제13,60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 제 1 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제26조의 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